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7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3-13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략담당관)	1
2023-14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략담당관)	5
2023-15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13
2023-16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산림과)	21
2023-17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림과)	27
2023-18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과)	33
2023-19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39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드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 확대함(안 제5조)

1) 드론 교육기관 ⇒ 드론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나.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교육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4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 31.~2.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교육기관”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술시장 선도를”을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드론 체험 및 교육)”을 “(드론 교육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민”을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b>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교육기관</u>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li> <li>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li> <li>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li> <li>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li> <li>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li> <li>6. <u>기술시장 선도를</u>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li> <li>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li> <li>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li> </ol>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u>교육기관</u>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b>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b>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u>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li> <li>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li> <li>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li> <li>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li> <li>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li> <li>6. <u>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u>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li> <li>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li> <li>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li> </ol>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u>기관·법인 또는 단체</u>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b>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b>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u>군민</u>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u>실시</u>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b>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 ①</b>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u>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u>할</u> 수 있다.</p> <p>② <u>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1)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2) 드론 교육에 드는 경비 지원

#### 나. 관련조문

-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5조)
- 2) 드론 교육 및 지원(안 제7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군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 1. 학생대상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0천원
- 2.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30,000천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 현 복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만성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 등에게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거창군 농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정함(안 제4조)
- 다.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5조~제11조)
- 라.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능 등을 정함(안 제12조)
- 마. 농촌인력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바. 지원 신청 등을 정함(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3.~2.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훈련
  4.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과 지원
  5. 농촌 일자리의 홍보와 정보제공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농작업의 구인·구직 확대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확보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농업인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 나. 농촌인력 중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농업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시고용인력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본다.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나. 관련조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안 제13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	300	300	300	300	1,50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 300백만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 현 복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때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이차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특례보증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정의 인용 상위법령 변경(안 제2조)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나. 이차지원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다. 이차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안 제5조)

라. 특례보증 신설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3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60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1.~2023. 1.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하여”를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지원

2. 소상공인이 이차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차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호,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li> <li>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제4조(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창업자금: 가게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u></li> <li>2. <u>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u></li> <li>3. <u>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u></li> </ol> <p>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li> <li>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u>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u></li> <li>나. <u>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u></li> </ul> </li> </ol> <p>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이자지원</u></li> <li>2. <u>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u></li> </ol> <p>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p>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④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이차지원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2.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차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차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차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p><u>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u></p> <p>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p> <p><u>제7조(지원 절차) ①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u></p> <p><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라 지원기준 확대</u></p> <p>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p> <p><u>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u>  <u>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lt;삭 제&gt;</u></p>
---	---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소상공인 이자지원 범위 확대

나. 관련 조문: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군비	192	384	384	384	384	1,728

### 3. 관련 의견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이자지원

1) 2023년: 융자액 48억(출연금의 12배)×4퍼센트=192백만원

2) 2024년: 384백만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국내 3대 화강석 채석 산지인 거창군의 석재산업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및 석재 채취업 및 가공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군수의 책무, 석재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을 정함(안 제6조)

라.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7조)

- 1)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 2)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
- 3) 석재사업장 시설 개선
- 4)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 5)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
- 6)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 20.~2. 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채취 또는 가공되는 석재 및 석재제품의 판매·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 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며,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석재산업단지
2.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
3. 석재 기능교육관 등 석재기술 보급 또는 연구·개발 시설

4. 석재를 활용한 공원 등 전시 및 휴식 공간
5.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축제 등의 개최 및 참가
2.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
3. 석재사업장의 시설 개선
4.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5. 쇠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
6.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비용,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비용

나. 관련 조문: 재정지원(안 제7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군비	100	100	100	100	100	500

### 3. 관련 의견

석재 채취업 및 가공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비용 지원

가. 채석 및 가공 업체 30개 × 1,000천원 = 30,000천원

2.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비용 지원

가. 채석업체 7개 × 10,000천원 = 70,000천원

작성자 산림과장 강 신 여



#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정원 개방 등의 활동 장려, 시민정원사 육성 및 활용, 정원 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정함(안 제4조)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정원문화 관련 교육,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2)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장려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다.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을 정함(안 제5조)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보급·관리, 기술지도 및 교육, 정보교류 및 협력,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등

2) 정원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라. 시민정원사 육성 등을 정함(안 제6조)

1) 시민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위탁 운영

2) 시민정원사 교육에 드는 경비 지원

마. 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지원을 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제18조의8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1.~2.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 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간판 등 홍보물 설치 및 정원 교육 지원

나. 관련 조문

- 1)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안 제4조)
- 2)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안 제5조)
- 3) 시민정원사 육성 등(안 제6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균비	20	20	20	20	20	100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3년도 총예산 20백만원
2. 간판 등 홍보물 지원: 15백만원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백만원

작성자 산림과장 강신여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8조)

1) 위원 수: 15명 이내 ⇒ 20명 이내

2) 위촉위원 중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 대표: 2명 ⇒ 7명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2.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 이경우 위촉 위원외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을 “7명”으로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한다.</p> <p>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u>한다</u>.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p> <p>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2명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u>한다.</p> <p>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u>한다</u>.</p> <p>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u>7명</u>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p> <p><b>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b>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u>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p> <p>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p>

현 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u>제9조의3(위원의 해촉)</u>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일 경우 수영장 사용료 등을 면제하여 어린이가 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1)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 면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 20.~2.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이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p>	<p><u>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u></p> <p>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u>군</u>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p>